

한국콜마(주) 보상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이사회 부의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및 기타 임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토의, 심의 및 의결한다.

제3조(직무와 권한)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바에 따라 다음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

1. 임원에 대한 보상정책 결정
2. 임원에 대한 보상제도 운영의 적정성 확인 및 임원들이 내부적으로 공평하고 외부적으로 경쟁력 있는 보상수단에 의해 효율적으로 보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3. 장기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임원 성과지표의 평가 결정
4. 기타 임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제 2 장 구 성

제4조(위원)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위원의 이사 임기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최초 이사 선임일을 기준으로 가장 먼저 선임된 이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선임된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6조(종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함 원칙으로 한다.
- ② 간사는 회의일 전일까지 개최시기 및 장소를 위원 및 참석대상자에게 통보한다.
- ③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는 소집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은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보고 또는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 및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 ①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한도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 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

- ① 등기이사의 성과평가
- ② 연간 등기이사 보수집행현황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 및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12조 (이사회와의 관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는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13조(간사)

위원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회 사무를 담당 처리한다.

제14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